

|       |                    |
|-------|--------------------|
| 의안번호  | 제 168 호            |
| 의결연월일 | 2019. . .<br>(제 회) |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발의자   | 최경천 의원 등 7인 |
| 발의연월일 | 2019년 4월 9일 |

##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경천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68 |
|----------|-----|

발의연월일 : 2019년 4월 9일  
발의자 : 최경천, 박상돈, 박형용,  
심기보, 육미선, 이상욱,  
이상정

###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고, 조문 체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문구 등을 정비함.

### 2. 주요내용

- 가.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안 제2조).
- 나. 지역아동센터의 수행 사업 규정(안 제4조).
- 다. 지역아동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안 제5조).
- 라. 충청북도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대한 규정  
(안 제6,7,8조)
- 마.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규정(안 제9조).
- 바.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대한 규정(안 제10조).
- 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 · 감독 규정(안 제12조).

### 3. 의안전문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36호
- 다. 협의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라. 비용추계 : 해당없음

##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법 제50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센터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전한 보호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3. 아동의 정서함양과 문화 체험활동 지원 사업

4.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등 정서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비(인건비, 운영관리비, 프로그램비 등)
  2. 센터 종사자 쳐우개선비
  3. 센터의 환경개선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
2. 센터, 아동, 보호자의 실태조사와 연구
3. 센터사업의 행·재정적 지원과 발전방안
4. 아동의 보호와 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5.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충청북도교육청 아동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2.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충북지부 대표

3. 센터의 장
4. 충청북도의회 의원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6.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아동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지도 · 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지도 ·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 ·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

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_보건복지부

### 라.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영역

- 1) 프로그램은 기본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으로 구성
- 2) 기본프로그램은 보호·교육·문화·정서지원·지역사회 영역으로 구성되며, 특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특수성 및 주요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을 의미

| 영역<br>(대분류) | 세부영역<br>(중분류) | 세부프로그램<br>(소분류) | 프로그램 예시<br>(시설별 선택 운영)                  |
|-------------|---------------|-----------------|---|
| 보호          | 생활            | 일상생활관리          | 센터생활적응지도, 일상생활지도, 일상예절교육, 부적응아동지도 등     |
|             |               | 위생건강관리          | 위생지도, 건강지도 등                            |
|             |               | 급식지도            | 급식지도, 식사예절교육 등                          |
|             | 안전            | 생활안전지도          | 저녁돌봄 등                                  |
|             |               | 안전귀가지도          | 안전귀가지도, 생활안전지도 등                        |
|             |               | 5대안전의무교육        | 교통안전, 실종유괴예방, 약물오남용예방, 재난 대비, 성폭력예방 등   |
| 교육          | 학습            | 숙제지도            | 숙제지도, 학교생활관리 등                          |
|             |               | 교과학습지도          | 수준별 학습지도, 온라인교육(PTV 학습 등),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등 |
|             | 특기적성          | 예체능활동           | 미술, 음악, 체육지도 등                          |
|             |               | 적성교육            | 진로지도, 적성교육(독서, 요리, 과학 등) 등              |
|             | 성장과 권리        | 인성·사회성 교육       |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                           |
|             |               |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 자치회의, 동아리 활동 등                          |
| 문화          | 체험활동          | 관람·견학           | 공연 및 연극 관람, 박물관 등 견학 등                  |
|             |               | 캠프·여행           | 체험활동, 캠프 및 여행 등                         |
|             | 참여활동          | 공연              | 공연 등                                    |
|             |               | 행사(문화/체육 등)     | 전시회, 체육대회 등 등                           |
| 정서 지원       | 상담            | 연고자 상담          | 부모 및 가족상담, 연고자 상담 등                     |
|             |               | 아동 상담           | 아동상담 등                                  |
|             |               | 정서지원 프로그램       |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
|             | 가족지원          | 보호자교육           | 보호자교육 등                                 |
|             |               | 행사·모임           | 부모소모임, 가정방문 등                           |
| 지역사회<br>연계  | 홍보            | 기관홍보            | 기관홍보 등                                  |
|             | 연계            | 인적연계            | 자원봉사활동, 인적결연후원, 후원자관리 등                 |
|             |               | 기관연계            | 지역조사와 탐방, 전문기관 연계<br>복지단체 연계 등          |

##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원안

(제정) 2009-10-09 조례 제 3214호

(일부개정) 2010-08-11 조례 제 3276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5-01-01 조례 제 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지역아동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라 함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 “아동”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사업”이라 함은 지역아동센터 설립과정과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 모두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의 건강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 아동의 정서함양과 문화활동 지원 사업.
-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 아동과 그 가정을 위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모두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이용아동 급식비.
- 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비.
- 센터 시설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1>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 8. 11>

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과 시설의 대표.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
4. 센터장과 시·도 연합회, 협의회 대표.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6. 충청북도의회 의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관이 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시행계획.
2. 센터, 아동, 보호자의 실태조사와 연구.
3. 센터사업의 행·재정적 지원과 발전방안.
4. 아동의 보호와 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5. 그 밖에 센터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해임과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 .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